

2023년도 제2회 강릉교도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재공고

강릉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강릉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인원
강릉교도소	공무직	조리원	1명

2. 담당예정 직무

- 음식 재료관리 및 조리
- 직원식당 위생 및 환경관리 등

3.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년 60세)
- 근무시간 : 1일 8시간(4개조 순환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1조 06:00 ~ 15:00, 2조 08:00 ~ 17:00
 - 3조 09:00 ~ 18:00, 4조 09:30 ~ 18:30
 -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순번에 따라 근무
-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학력, 주거지 제한 없음
 - ※ 단, 근무지(강릉교도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6. 우대사항

가. 조리 관련분야 근무 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재직·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직무관련 자격증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 기 능 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 우대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사항은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함

7. 가산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제1항제1호 해당자 : 만점의 10%, 제1항제2호 해당자 : 만점의 5%
 - 단, 동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원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 가산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가산사항은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함

☞ 가산사항이 중복 해당 시 상위 점수 1개만 적용함

8. 급여 및 후생복지

- 기본급 : 1,899,820원(세전, 초과 및 휴일수당 등 별도)
-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상여금(550,000원씩 연 2회) 및 맞춤형 복지비(연 500,000원)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9.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예정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적극적 서류전형 선발기준
 -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 종합적 판단
 -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 실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
 - 직무관련 자격증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 중 1개만 인정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3) 가산 요소 (해당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저소득층 · 장애인 가산

나. 제2차 시험 : 면접전형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 ·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세부방법

- 면접시험은 구조화된 면접방식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위원들이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위항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가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신원조사 불합격 등)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10.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3. 31.(금) ~ 4. 6.(목)	'23. 4. 4.(화) ~ 4. 6.(목)	'23. 4. 11.(화)	'23. 4. 13.(목)	'23. 4. 14.(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응시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4. 4.(화) ~ 4. 6.(목)

다. 응시원서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강릉교도소 (총무과)	(우25522) 강원 강릉시 공제로 413-15	033-649-8224	인 사 담당자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 접수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12. 제출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목록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원서 작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공통 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공통 필수
8. 조리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근무기간(연·월)·직위(급)·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성명, 연락처 포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9.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조리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종
10. 소득금액 증명원(경력기간 포함)	○ 조리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11.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2. 취업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13.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남성만 제출)	○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격증 등 제출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중 서명란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 자필 서명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서명

13.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강릉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강릉교도소 복지과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본인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증명서류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4. 17. ~ 2023. 5. 16.

-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채용신체검사,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장에 출입이 금지되며,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릉교도소 총무과(☎ 033-649-8224) 인사담당자

제출서류 목록

성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강릉교도소	조리원(공무직)

■ 제출서류(총괄표)

목 록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필수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미제출
	2 응시원서 1부	☐ 제출 ☐ 미제출
	3 이력서 1부	☐ 제출 ☐ 미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 제출 ☐ 미제출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
	6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제출 ☐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제출 ☐ 미제출
우대 및 가산요건 해당자 제출서류	9 조리 관련분야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출 ☐ 미제출
	10 4대 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11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제출 ☐ 미제출
	12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13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	☐ 제출 ☐ 미제출
	14 저소득층 및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1부	☐ 제출 ☐ 미제출

※ 제출한 서류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란에 “✓” 표시

※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강릉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강릉교도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조리원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3년도 제2회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강릉교도소장 印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조리원' 으로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예,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요건

응시 번호	응시 기관	강릉교도소	응시 분야	조리원	성명 (한자)	
주소				연락처		

나. 응시자격

응 시 요 건	결격사유 해당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응 시 연 령	복 수 국 적
	☐ 예 ☐ 아니오	☐ 18세이하 ☐ 18세이상	☐ 예 ☐ 아니오

다. 우대사항

근 무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라. 가산사항

가 산 요 건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현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응시자격

- ① 각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칸에 √ 표시
 - ☐ 예 ☐ 아니오

◎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① 우대사항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 최근 경력부터 기재
 -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고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작성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 ② 우대사항 및 가산사항의 추가사항 작성 필요시 2장으로 이어서 작성 가능
- ③ 취업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증빙서류
 - 세부내용에 가산비율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 본인 및 유족 여부
 - 발행기관 : 국가보훈처, 해당 지자체 등 증빙할 수 있는 기관 기재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	------	-----------------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제6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강릉교도소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제2회 공무원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강릉교도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강릉교도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 등</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결격사유자료</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 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강릉교도소</u>	<u>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u>	성명, 주민등록번호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강릉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